## KOSHA GUIDE

C - 93 - 2013

것을 확인한 후 발파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

- (다) 강우, 낙뢰 시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화약 등을 화약고에 안전하게 입고 하여야 한다.
- (라) 불발공을 재발파하는 것은 충분한 조사가 끝난 후에 하여야 하며, 불발 공에 잔류화약이 있을 때에는 압축공기 또는 물을 사용하여 회수하여 야 한다.
- (8) 우물통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조명 및 환기와 관련하여 다음의 안전 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 준수 사항을 지키도록 한다.
  - (가) 우물통 내부의 조명장치 및 설비를 확인해야 하며 75 럭스(Lux) 이상 의 조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.
  - (나) 발파 후 유해가스나 분진이 신속히 우물통 외부로 배출되도록 환기시키고 유해가스 및 분진의 농도는 노출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.
  - (다) 소요 환기량에 충분한 용량의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송풍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적정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 - (라) 분진 및 유해가스의 농도를 수시로 측정하여 노출기준 이하로 유지되도 록 환기 및 살수하여야 한다.
  - (마) 분진발생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관리한 다.

## 7. 거치식 우물통기초 안전조치 사항

## 7.1 우물통 제작

## 7.1.1 거푸집 제작 및 철근 조립

(1) 강재 거푸집 사용 시에는 반드시 벽체에 작용하는 콘크리트 측압 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조립도를 작성하여야 하고, 해당 조립도에 따라 시